

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(안) 심사보고

2004. 12. 20(월)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2월 9일 이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74회 이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제1차(2004. 12. 17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박재한)

가. 제안이유

-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(안 제2조)

-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관한 사항, 새로운 기술·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가 된 사항 및 일괄입찰·실시설계시공입찰·대형공사업찰에 대한 사항을 심의

○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(안 제3조)

-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○ 소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(안 제7조)

- 기능 :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
- 구성 :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

○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(안 제9조)

-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○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자문대상(안 제12조)

-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(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)가 100억 원 이상인 공사
- 총 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
-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

○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 사후관리(안 제14조)

-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규하)

-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
- 안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

- 안제3조 내지 제6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건설도시국장으로 구성운영하고 당연직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,
- 안제7조 내지 제9조는 소위원회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회의소집과 자문·심의 등에 대하여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규정을 두었고
- 안제10조 및 제11조는 안건설명 및 기술검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- 안제12조 내지 제14조는 설계자문대상을 선택하여 자문요청을 하고 자문결과를 관련기관·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